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주택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의무를 법률에 규정 등〉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6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2
2.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 추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필요비용 지원 근거 신설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3. 11.
3. 회 부 일 : 2026. 0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함)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 ----- ----- ----- ----- ----- ----- ----- -----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

현행	개정안
② ~ ⑦ (생략)	<u>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의 관계인²⁾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³⁾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이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⁴⁾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 한편, 이 법 시행령 [별표 1]은 소화기구의 종류로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를 규정하고 있고⁵⁾⁶⁾, 시행령 [별표 4]는 연면적 33㎡⁷⁾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에는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를 중심으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국립소방연구원공고)은 소화기의 설치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1) 각 세대 및 공용부에는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 2)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3) 주방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로,

1개당 3만원의 비용으로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좁은 분사 면적(방호면적 1㎡) 및 짧은 분사시간

나. 자동소화장치

- | | |
|------------------|-----------------|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가스자동소화장치 |
| 5) 분말자동소화장치,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해당 내용 발췌

6) 그 밖의 소화설비의 종류는 [참고 1] 및 [참고 2] 참조

7) 연면적 33㎡는 약 9.9825평임.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소방청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은 연면적 33㎡ 이상이라고 설명함.

(10초)으로 인해 설치 조건에 따라 소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공동주택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관련 소방규정이 마련된 1984년부터 공동주택의 보일러실 등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⁸⁾, 이후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장소가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의 주방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 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⁹⁾¹⁰⁾.

8)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2.1.1.3에 따라 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3에 따라 보일러실이 방화구획 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 적용하지 않고 있음.

9)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변경 연혁은 [참고 3] 참조

10)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성능 등을 비교한 상세 내용은 [참고 4] 참조

<자동확산소화기 개요(예시제품 기준)>

구 분	주요내용
특징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기능	▶ 화재 시 열 감지(72℃)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
설치기준(현행)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3
단가	▶ 30,000원(개당)
총중량	▶ 4.79kg
방호면적	▶ 1m×1m
방사시간	▶ 10초
제품사이즈	▶ 255×255×193(mm)
장점	▶ 주변 인근으로 연소확대 방지효과 있음
단점	▶ 좁은 분사 면적 및 짧은 분사 시간에 따른 소화 실패 가능성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층에 자동
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제1항 후단),

기존의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
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초기 소화에 효과적인 설비로 평가되나,
소방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
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비율은 전체의 45.32%임¹¹⁾. 또한, 소방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고¹²⁾, 2020년 이후 공동주택 화재는 총 28,477건

11)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스프링클러)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기숙사 (스프링클러)	계
전체 수*(A)	12,973,943	542,861	258,136	194,750	13,969,690
스프링클러/간이스 프링클러 설치 세대 수(B)	6,288,943	944	408	41,200	6,331,495
B/A	48.47%	0.17%	0.15%	21.15%	45.32%

* 세대수 기준
(자료: 소방청)

12)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화재위험평가 결과표' >

평가등급	대 상 물
5등급	▪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
4등급	▪ 판매 및 영업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등급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동·식물원), 자원순환시설, 운수자동차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2등급	▪ 지하구,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1등급	▪ 문화재, 업무시설

발생하여 407명이 사망하고 3,128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1,7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¹³⁾.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¹⁴⁾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기를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하기

※ 자료 :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청 연구용역 자료('18.10월)
13) <2020년 이후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28,477	407	3,128	179,809
2020	4,719	74	486	27,596
2021	4,399	67	531	59,154
2022	4,577	72	476	19,217
2023	4,869	58	526	20,329
2024	4,983	61	500	25,080
2025	4,930	75	609	28,433

(자료: 소방청)

14)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 20평(66㎡)을 기준으로 1세대당 약 85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비용>

구 분	스프링클러 (1,000㎡)		간이 스프링클러 (1,000㎡)	
	신 축	소 급	신 축	소 급
공사비용	10만원/㎡	13만원/㎡	7.1만원/㎡	10.1만원/㎡
공사기간(1,000㎡ 기준)	8일	15일	5일	10일
공사방법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자료: 소방청)

위해서는 자동확산소화기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2026년 3월에 자동확산소화기의 소화 성능 등 효과성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음. 소방청은 실증시험 결과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조건에 따라 연소억제 등 소화 효과성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자동확산소화기를 통해 초기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소화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또한, 소방청은 자동확산소화기의 분사 면적이 좁고 분사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각 방과 거실 등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다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동 확산소화기 성능검증 시험 개요】

- ▶ (기간/장소) '26. 3. 23. ~ 3. 25.(3일간) / 중앙소방학교 훈련탑(천안 소재)
- ▶ (참여기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시험방법) 거실(약 25㎡) 및 방(약 11㎡, 18㎡) 사이즈별 밀폐공간의 화재에 분말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조건(위치, 개수 등)에 따른 소화 효과성 확인
- ▶ (시험결과) 11회 중 7회 성공, 4회 실패(성공률 63.6%)¹⁵⁾

(자료: 소방청)

참고로, 이 법은 한 때 자동확산소화기를 11층 이상의 공동주택

15) 소방청은 자동확산소화기를 실제 설치하려면 성능검증 시험에서 100.0%의 성공률이 필요하고, 100%의 성공률을 보여도 유지·관리에 따라 실제 화재 시 작동이 안될 수 있으므로 63.6%의 성공률로 이를 의무화 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¹⁶⁾, 기존 자동확산소화기를 주방에 특화된 전용 소화장치인 자동식소화기(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¹⁷⁾)로 대체하여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1995년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¹⁸⁾.

둘째, 현행 법령의 규정 형식과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① ‘법률’에서는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시행령’ [별표]에서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다른 소방시설은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⁹⁾,

16) 1989년 5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17) 소화기능, 가스누설탐지, 화재경보, 가스공급의 차단 기능 보유

18) 상세 연혁은 [참고 3]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변경 연혁 참조

19)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상세 내용은 [참고 5] 참조

이와 같은 개정안의 규정 형식은 현행 법령과 체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소방대상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법률에 둘 필요성과 법령 규정의 통일성·일관성 측면, 과학기술 발전 및 소방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규정 형식 비교>

구 분	소방시설명		
	자동확산소화기		기타 소방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특정대상물	
현 행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개정안	법 률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비 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장소)	- 현행 법령: 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만 설치 - 개정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		

셋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기존의 공동주택(신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부칙 제3조),

초기 화재의 효과적인 진압을 목적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7조 3,3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방청은 추정하고 있음.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비용 산출 내역²⁰⁾>

구분	총액	세대수	설치단가	비고
계	7,338,697백만원	9,530,776	770,000	자재비(150,000), 시공비(384,000), 간접경비(236,000)
아파트	5,147,450백만원	6,685,000	770,000	
연립	418,002백만원	542,861	770,000	
다세대	1,773,144백만원	2,302,915	770,000	

(자료: 소방청)

한편, 자동확산소화기 크기(255×255×193(mm))·무게(4.8kg)로 인해 이를 거실이나 방에 설치할 경우 주거공간 내 시각적 이질감이 크고 조명기구와의 간섭 등으로 국민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자동확산소화기의 권장 내용 연수(10년)가 경과하면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 비용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현재 소방청과 관계 부처는 공동으로 화재취약자 보호를

20) - 공용부를 제외한 세대 내 거실 2개 및 방 3개를 가정하여 최소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다만, 바닥면적 10㎡를 초과하는 경우 2개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3.규정에 따라, 세대의 면적에 따라 설치 비용은 증가할 수 있음.

- 기숙사는 아파트와 구조가 다른 관계로 설치비용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위해 ① 공동주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병행 시행, ②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연기감지기 보급, ③ 돌봄공백 아동에 대한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④ 초등학생 피난대피 교육 및 화재 예방·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화재취약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정부 정책 추진 현황>

(추진배경) 부산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다수 사망자 발생

(추진경과) 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실시*

*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1차 '25.7.4., 2차 7.17.) /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주재 회의(7.11.)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일정)

1.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병행

- (기 간) 2025. 7. 1. ~ 9. 9.
- (점검결과) 전체 25,380개 단지 중 24,976개 단지 점검완료
- (점검내용) ① 현장점검, ② 입주민 등 관계자 교육, ③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
 - ① 현장점검 :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유관기관(건축, 가스, 전기) 합동 점검 등
 - ② 관계자 교육 : 아동 대상 피난대피 방법(필수), 부주의·전기 등 화재 예방 방법 등 교육
 - ③ 실태조사 : 전국 아파트 전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

2.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26 ~ '28년)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미설치 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피난약자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추진('26년 90억(국비, 지방비 8:2 매칭) / 3년간 총 270억)
 - * '25년 노후 아파트 거주 돌봄공백 24,570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우선 보급 완료
- (장기과제) 기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작동하면서 경보 기능이 내장 되어있는 연기감지기 개발 추진

3. 돌봄공백 아동에 대한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26.5.1. 전면 시행)

- (시스템 구축) 119안심콜*과 연계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업데이트 완료
 - * 화재 시 가입자 주소 기반 화재발생 사실 알림(문자) 및 피난 안내(전화) 서비스
- (추진경과) 전국 119상황요원·예방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에 이어 시범 운영('26.3.30. ~ 4.30)을 거쳐 시스템 보완 후 전면 시행(5.1.부터) 예정
- (향후계획) 119화재대피안심콜 가입 대상을 24시간 상주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비상 방송과 초기대응 유도

4. 초등학생 피난대피 교육 및 화재 예방·홍보

- (화재예방교육) 안전체험 차량 활용,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가 직접 방문을 통한 화재예방 교육 실시
 - ※ 3,417개교 중 1,029개교 275,280명 교육완료, 2학기부터 연말까지 교육 확대
- (예방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수칙, 냉방기기 및 콘센트 안전 사용 홍보
 - * 여름철 전기사용 안전수칙 영상, 안전한 냉방기기 사용법 등
- (교육콘텐츠) 유아·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 응급처치 2개 분야 7종* 콘텐츠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북'개발 및 홍보
 - * 화재대피, 화재진압,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화상·상처 응급처치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요건 변경은 소화효과성, 설치비용, 국민 수용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성능 실험결과 설치 조건에 따라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²¹⁾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을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고,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용연수(10년) 경과 시 주기적인 교체 및 유지관리가 필수적인데 기존 공동주택(950만세대)에 설치하는

21) 화원 위치(모서리, 직하), 소화기 설치(중앙직하, ^{2/3}45도, 45도) 방향, 소화기 개수(1개, 2개), 화재모형, 실험장소의 규모에 따라 소화가 되거나 실패하였음.

※ 총 11회 실험 중 7회 성공, 4회 실패 (자료: 소방청)

비용만도 약 7조 3,387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²²⁾.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자동확산소화기가 거실, 침실 등 넓은 공간의 초기 화재 진압에 적응성이 있는지 명확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주택 전 층에 일률적(소급)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화재진압의 실효성 대비 규제가 과도하고,

기존 공동주택 천장의 구조체는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재로 마감되어 있기에 일정 무게(4.79kg)가 있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세대 내 천장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부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며 자동확산소화기의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2) 소방기술사회 역시 자동확산소화기의 국부 방호 특성으로 인해 공간방호 성능이 부족하고, 기존 건축물 적용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 추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필요비용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제1항제2호마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제12조제1항에----- ----- ----- ----- ----- ----- ----- ----- ----- -----

현행	개정안
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 라.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u><신설></u>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공동주택</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부칙 제2조(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또는 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제1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본문)²³⁾,

이는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대통령령 또는

23) - 동 특례조항은 이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4.5.30.] [법률 제6895호, 2003.5.29., 제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단서)²⁴⁾,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이고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건축물 구조, 인테리어 등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음.

<제13조제1항제1호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소방시설>

구 분		종 류
소방 시설 (제1호)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공동구²⁵⁾, 전력 및 통신사업용

24)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구,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 제2호),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들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공공성 측면 또는 화재취약자 보호 측면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제13조제1항제2호 :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개)

구 분		현 황	소급해서 설치한 소방시설(예시)
특정 소방 대상물 (제2호)	공동구	76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 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1,285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 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노유자 시설	77,156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의료 시설	4,40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료: 소방청)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제13조제1항제2호)의 특징>**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	1. 특징 2. 소급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계기 3. 현재 추진 중인 상황 4. 비용 지원시 지원 주체 5. 법적 근거(현행법 제13조제1항 외의 법적 근거)
공동구	1. 공동구는 지역개발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며, 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음. 2. KT 아현지사 화재사고('18.11.24.) 및 통신·전력구 실태점검 결과 공동구 및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필요* *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관련 관계기관 화재안전대책 마련('19.12.6.) 3. 소급대상 31개소 100% 추진완료 4. 공동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44조의2²⁶⁾) - 자체 예산으로 비용 부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²⁷⁾
전력 및 통신 사업용 지하구	1. 기존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20.12.10.시행) 2. KT 아현지사 화재(2018.11.24.) 관련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3. 2년 이내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22.12.9.), 1194개소 100% 완료 4. 한국전력공사, KT에서 관리 및 비용 부담 *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없음
노유자 시설	1.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 2.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관련 대책 보고(국무회의, 10.11.16) - 전기추정(1층 분전반)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간이SP 미설치) - 인명피해 : 사망 10명, 부상 17명 3. 추진완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 공포 : '11. 10. 28. / 시행 : '12. 2. 5. [※ 기준 시설은 시행후 2년('14. 2. 4.) 이내에 설치]) 4. 소규모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설치 긴급지원(보건복지부), - 지원형태 : (개인시설) 국가 : 지방 : 민간(4:4:2), (법인시설) 국가 : 지방(1:1)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	1. 특징 2. 소급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계기 3. 현재 추진 중인 상황 4. 비용 지원시 지원 주체 5. 법적 근거(현행법 제13조제1항 외의 법적 근거)
의료 시설	1.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심각 2. 2018.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3. 30병상 이상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²⁸⁾ → 설치 기한: 기존 시설은 시행 후 3년('22.8.31.) 이내에 설치 → 설치 기한 연장: 기존 시설은 '26. 12. 31. 이내에 설치 ²⁹⁾ 4. 복지부:지자체:자부담 간 매칭*으로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24년: 3: 3: 4, '25년: 2.5 : 2.5 : 5
노후 건축물	※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 건축물 한정 1.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2. 2017.12월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 3. 외벽 불연화,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건축물에 예산 지원 4.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씩 지원 5.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의2 ³⁰⁾

(자료: 소방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8) 대통령령 제30029호, 공포일: '19. 8. 6. / 시행일: '19. 8. 9.

29) 대통령령 제33004호, 공포일: '22. 11. 29./ 시행일: '22.12.1.

30)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공공성, 화재취약자 보호 측면에서 공동주택이 현행법 제13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은 국가 운영 또는 국민 보호에 기여하는 강한 공공성·공익성을 가진 시설임. 이에 비해 공동주택은 개인의 주거 목적의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하며, 모든 공동주택이 공공이익 도모나 화재취약자 보호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공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367호(2023. 4. 18.)]

둘째,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예산 편성·집행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법 제3조 제3항³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다음으로, 그 동안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소급해서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법률(법 제13조제1항 각 호³²⁾)에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소방대상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령 제13조³³⁾)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2) 조문 내용은 각주 2) 참조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령 부칙에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³⁴⁾.

한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³⁵⁾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음.

예를 들어 기존의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 시행령을 2011년에 개정하였고³⁶⁾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지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35) 현행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경우는 소방시설법의 법적 근거 없이도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 등을 바탕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강화(완료)한 바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예를 들면, '18.11.24.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전력구에 대한 관계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동구 및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전력 및 KT 등 사업용 전력·통신구 및 공동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점용하는 면적별로 자체 예산(관리비용)을 통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 하였음(출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였음³⁷⁾).

기존의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2019년에 이 법 시행령에 명시하였고³⁸⁾,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³⁹⁾⁴⁰⁾, 보건복지부에서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7) -설치 기한: 2012. 2. ~ 2024. 2.

-설치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 노유자 시설

-설치 실적: 노유자 시설 총 1,698개소 중 1,443개소(전체의 84.98%)의 노인관련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

-지원형태(설치비용 분담 형태):

· (개인시설)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 4:4:2

· (법인시설) 국가(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1:1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029호, 개정일 2019.8.6., 시행일 2019.8.6.)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3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40)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9.8.6.)에서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의료공백(병실공백)과 화재저감을 위한 스프링클러설치 소급 간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보건복지부·군병원·의료단체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3차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004호, 2022. 11. 29.)」 부칙 제8조제1항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⁴¹⁾⁴²⁾.

- 41) 다만,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에 입점하고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외에 건축물 구조 등을 추가로 공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진료가 어려워, 의료기관은 설치비용 외에 수입 감소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 42) 그 밖에, 소방청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의 경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 건축물에 한정해서 기존의 건물도 외벽 불연화 시설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는데,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는 「건축물 관리법」(제29조의2)에 마련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의 1/3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함.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4. 18.>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관계인이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인에게는 비용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관계인의 비용부담 완화와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률에 소방시설의 설치 관련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제3조제3항), 비용 지원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획예산처는 소방시설 설치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인(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참고 1 소방시설의 종류 별 기능 및 예시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관련 내용 발췌

소방시설의 종류	주요 기능	종류(예시)	비고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등, 물분무등소화 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 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 수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참고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징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관련 내용 발췌

소화설비의 종류		특징	비고
소화기구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식 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물을 끌 수 있도록 밸브를 열면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수동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펌프가 작동하여 물탱크의 물을 배관으로 보내어 천장, 벽 등에 설치된 헤드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자동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유류화재, 전기화재 또는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고가 장비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소화전으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밖에서 소화전호스를 연결하여 건물의 불을 끄는 기능 또는 인접 건축물에 대한 연소확대 방지 용도로 사용	

참고 3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변경 연혁

(자료: 소방청)

시행일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비 고
1984.08.16.	❖ <u>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 관한 규칙</u>(별표4) ▶ <u>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음식점의 주방 등</u>	설치기준 도입 자동확산 소화용구
1989.05.01.	▶ <u>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원·사업장·공장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1993.11.11.	❖ <u>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u> 별표4 ▶ <u>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및 11층 이상의 층에 있는 아파트의 주방</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1995.05.27.	▶ <u>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11층 이상의 층에 있는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도록 하였던 자동확산소화기는 공동주택의 주방에 특화된 전용 소화장치인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로 대체됨	
1998.5.12.	▶ <u>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2001.1.9.	▶ <u>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위험물제조소등의 펌프실	
2001.7.27.	▶ <u>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u> ▶ <u>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u>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위험물제조소등의 펌프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시행일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기준	비 고
2004.6.4.	❖ <u>소화기구</u>의 <u>화재안전기준</u>(별표4)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2007.12.28.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2010.12.27.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	
2012.6.11.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자동확산 소화장치
2017.6.12.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자동확산 소화기
2023.9.8.	❖ <u>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u> 표 2.1.1.3 ▶ 보일러실(아파트는 방화구획된 것 제외)·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2024.1.1.	▶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 ▶ 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자료: 소방청)

참고 4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성능 등 비교

(자료: 소방청)

구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형태			
방출면적	21.24㎡ (원 : 지름 4.6m)	21.24㎡ (원 : 지름 4.6m)	1㎡ (사각형 : 가로1m×세로1m)
방출량	물 1,600ℓ (80ℓ × 20분)	물 500ℓ (50ℓ × 10분)	분말 3kg
설치비용	약 81조7천억원 (1,000㎡당 1억3천만원) 노후공동주택세대수 (950만세대)	약 52조2500억원 (1세대당 550만원) 노후공동주택세대수 (950만세대)	약 7조3387억원 (1세대당 77만원) 노후공동주택세대수 (950만세대)
장점	▶ 수원, 가압송수장치 등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20분 이상 안정적으로 소화수 방출 가능(필요시 송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수 공급도 가능)	▶ 수원, 가압송수장치 등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10분 이상 안정적으로 소화수 방출 가능(필요시 송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수 공급도 가능)	▶ 중량(4.8kg)을 견딜수 있는 견고한 지지대를 부착하면 설치 가능
단점	▶ 많은 설치 비용+높은 시공 난이도 ▶ 공사 중 세대 퇴거 필요	▶ SP 못지 않은 비용 및 시공 난이도 ▶ 공사 중 세대 퇴거 필요	▶ 좁은 분사 면적 및 짧은 분사 시간에 따른 소화 실패 가능성 ▶ 소화성능 실험결과 설치조건에 따라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 추가검증 필요

참고 5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중 관련 내용 발췌

구분	시설명	설치기준
1. 소화설비	1)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2)주거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3)옥내소화전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600㎡ 이상,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경보설비	1)단독경보형감지기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3)자동화재탐지설비	아파트등·기숙사 모든 층
	4)비상방송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 연면적 3천5백㎡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5)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3. 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모든 층(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제외)
	2)유도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3)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구분	시설명	설치기준
설비		
5. 소화설비	1)제연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연결송수관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② ①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③ ① 및 ②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비상콘센트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5)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